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6. 21.
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6월 8일

나. 발의자: 김길자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6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6. 20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통합돌봄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과 인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안 제7조)
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및 통합돌봄 사례회의(안 제8조~ 안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- 본 조례안은

- 「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

- 주요 내용은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」 이고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공 기관의 지정과 인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및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

-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, 보건·의료, 요양, 돌봄 등의 통합적인 지역주도형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,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었고,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

(김길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2년 6월 일

발의자: 김길자 의원 외 3명

## 1. 제안이유

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  
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통합돌봄 지원업무 및 제공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함  
(안 제5조 ~ 제6조)

라. 인력·예산에 관한 사항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~ 제8조)

마. 통합돌봄 사례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9조 ~ 제10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 및 제2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2. 6. 8. ~ 6. 14.)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사회 통합돌봄”(이하 “통합돌봄”이라 한다)이란 고령, 장애, 질병,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, 보건·의료, 요양, 돌봄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.

2. “통합돌봄 대상자”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

다.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3. “통합돌봄 제공기관”이란 통합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·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**제4조(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)**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
2.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
3. 분야별 추진 시책 및 추진 방법
4. 필요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안 및 운용에 관한 사항
5. 교육·홍보·연구·평가에 관한 사항
6. 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통합돌봄 계획수립 및 시행은 통합돌봄 대상별 관련부서에서 시행한다.

**제5조(통합돌봄 지원업무)**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지원
2.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연계
3. 요양 및 여가 등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
4. 그 밖에 구청장이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부터 통합돌봄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등의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6조(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)**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·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,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**제7조(인력 및 예산지원)**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)**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

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1.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3.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
**제9조(통합돌봄 사례회의)**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(이하 “사례회의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, 주거, 돌봄 분야 전문가와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으로 한다.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의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③ 사례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,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·실시한다.

**제10조(수당)**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